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2010. 9. 2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0년 8월 30일 마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0년 9월 6일

다. 상정일자 : 제155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위원회(2010. 9. 20)
제155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위원회(2010. 9. 27)
제155회 제1차정례회 제3차 위원회(2010. 9. 28)
제155회 제1차정례회 제4차 위원회(2010. 9. 29)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기획재정국장 김 정 선

가. 제안이유

○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사항을 관련법규 및 지정된 기준에 의하여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마포구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마포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나. 제출내역

○ 2009회계연도 마포구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결산서
○ 결산검사의견서
○ 재무보고서
○ 결산 증빙자료(결산서에 포함)
○ 예비비 지출(결산서에 포함)
○ 기금 결산(결산서에 포함)

다. 주요내용

1)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

○ 예산현액 4,042억 2,080만 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180억 870만 2천원이고,
지출액은 3,250억 3,669만 1천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 929억 7,201만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함.

○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 명시이월 82억 2,592만 8천원
- 사고이월 133억 6,837만 8천원
- 보조금 집행잔액 47억 5,806만 7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66억 1,963만 7천원이다.

2)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는

○ 예산현액 3,657억 5,437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765억 4,592만 4천원이고
지출액은 3,070억 8,658만 4천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 694억 5,933만 9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 명시이월 70억 3,873만원원
- 사고이월 131억 1,811만 2천원원
- 보조금 집행잔액 44억 1,035만 3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48억 9,214만 4천원임.

3) 2009회계연도 4개 특별회계에 대한

가) 총괄 결산상황은

○ 예산현액 384억 6,643만 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14억 6,277만 8천원원이며
지출액은 179억 5,010만 6천원원이며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 235억 1,267만 1천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함.

○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 명시이월 11억 8,719만 8천원
- 사고이월 2억 5,026만 6천원
- 보조금 집행잔액 3억 4,771만 4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7억 2,749만 2천원임.

4) 2009회계연도 예비비에 대한

○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91억 4,682만 8천원으로,

○ 주요내역은
서강동 동청사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배상금 8,335만 1천원, 콜센터 민간위탁운영 부족분 3,018만원,
마포디자인 개발진흥지구 지정 진흥계획 수립 용역비 4억5,000만원,
현석동 마을마당 조성 토지보상 화해결정 판결금 8,400만원, 호우피해로 인한 재난지원금으로 1,100만원을 지출결정함.

5) 2009회계연도 기금은 15종으로서

○ 2009회계년도 우리구에서 설치 운용중인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5종으로서,
2008년도말 현재액은 297억 6,777만 8천원이며,
2009년도에 총 234억 4,719만 3천원을 수납하고
총 173억 7,164만 6천원을 지출하여
2009년도말 현재액은 358억 4,332만 5천원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신 승 관)

< 검 토 결 과 >

▣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 전 체

◦ 예산현액 : 404,220,802,817원(전년도 이월액 23,527,995,817원 포함)

◦ 세입결산액 : 418,008,702,635원

◦ 세출결산액 : 325,036,691,765원

◦ 차인잔액 : 92,972,010,870원

◦ 차인잔액 다음연도 이월내역

- 명시이월 : 8,225,928,000원
- 사고이월 : 13,368,378,050원
- 보조금집행잔액 : 4,758,067,756원
- 순세계잉여금 : 66,619,637,064원

○ 일반회계

◦ 예산현액 : 365,754,370,608원(전년도 이월액 17,755,625,608원 포함)

◦ 세입결산액 : 376,545,924,611원

◦ 세출결산액 : 307,086,584,816원

◦ 차인잔액 : 69,459,339,795원

◦ 차인잔액 다음연도 이월내역

- 명시이월 : 7,038,730,000원
- 사고이월 : 13,118,112,050원
- 보조금집행잔액 : 4,410,353,230원
- 순세계잉여금 : 44,892,144,515원

○ 특별회계

◦ 예산현액 : 38,466,432,209원(전년도 이월액 5,772,370,209원 포함)

◦ 세입결산액 : 41,462,778,024원

◦ 세출결산액 : 17,950,106,949원

◦ 차인잔액 : 23,512,671,075원

◦ 차인잔액 다음연도 이월내역

- 명시이월 : 1,187,198,000원
- 사고이월 : 250,266,000원
- 보조금집행잔액 : 347,714,526원
- 순세계잉여금 : 21,727,492,549원

▣ 세입 결산

○ 일반회계

(단위 : 원)

예 산 과 목	2009회계연도				
	예 산 현 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징수율	
				현액 대비	결정액 대비
합 계	365,754,370,608	405,995,446,221	376,545,924,611	102.95	92.75
지방세수입	62,695,536,000	65,947,804,670	64,526,685,790	102.92	97.85
세 외 수 입	106,458,961,608	139,618,779,581	111,590,376,851	104.82	79.93
지방교부세	3,850,000,000	7,150,089,000	7,150,089,000	185.72	100.0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91,449,457,000	95,568,514,470	95,568,514,470	104.50	100.00
보 조 금	101,300,416,000	97,710,258,500	97,710,258,500	96.46	100.00

○ 특별회계

(단위 : 원)

예 산 과 목	2009 회계연도				
	예 산 현 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징수율	
				현액 대비	결정액 대비
합 계	38,466,432,209	67,405,029,223	41,462,778,024	107.79	61.51
세외수입	36,096,654,209	65,046,981,223	39,104,730,024	108.33	60.12
보 조 금	2,369,778,000	2,358,048,000	2,358,048,000	99.51	100.00

▣ 세출 결산

○ 전 체

(단위 : 원)

과 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집행율
합 계	404,220,802,817	325,036,691,765	21,594,306,050	57,589,805,002	80.41
인 건 비	93,873,330,600	89,633,430,420	-	4,239,900,180	95.48
물 건 비	35,112,936,250	30,528,434,180	268,785,220	4,315,716,850	86.94
경상이전	138,787,946,900	125,235,845,184	119,400,000	13,432,701,716	90.24
자본지출	106,056,387,067	68,449,796,984	21,206,120,830	16,400,469,253	64.54
융자및출자	4,000,000	-	-	4,000,000	-
내부거래	6,054,454,000	6,054,454,000	-	-	100.00
예비비및기타	24,331,748,000	5,134,730,997	-	19,197,017,003	21.10

○ 일반회계

(단위 : 원)

과 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집행율
합 계	365,754,370,608	307,086,584,816	20,156,842,050	38,510,943,742	83.96
인 건 비	92,460,181,600	88,402,460,130		4,057,721,470	95.61
물 건 비	33,899,419,250	29,620,399,050	268,785,220	4,010,234,980	87.38
경상이전	130,284,902,900	118,474,422,725	119,400,000	11,691,080,175	90.93
자본지출	92,241,180,858	59,568,576,704	19,768,656,830	12,903,947,324	64.58
내부거래	6,054,454,000	6,054,454,000			100.00
예비비 및 기타	10,814,232,000	4,966,272,207		5,847,959,793	45.92

○ 특별회계

(단위 : 원)

과 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집행율
합 계	38,466,432,209	17,950,106,949	1,437,464,000	19,078,861,260	46.66
인 건 비	1,413,149,000	1,230,970,290		182,178,710	87.11
물 건 비	1,213,517,000	908,035,130		305,481,870	74.83
경상이전	8,503,044,000	6,761,422,459		1,741,621,541	79.52
자본지출	13,815,206,209	8,881,220,280	1,437,464,000	3,496,521,929	64.29
융자및출자	4,000,000			4,000,000	-
예비비및기타	13,517,516,000	168,458,790		13,349,057,210	1.25

▣ 집행잔액 현황

○ 일반회계 : 38,510,943,742원

◦ 집행잔액 내역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923,244,219원
- 예산절감 : 130,726,000원
-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 23,271,954,293원
- 보조금 집행잔액 : 4,385,483,230원
- 예비비 : 5,799,536,000원

○ 특별회계 : 19,078,861,260원

◦ 집행잔액 내역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016,916,000원
- 예산절감 : 272,800,000원
-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 3,094,138,734원
- 보조금 집행잔액 : 347,714,526원
- 예비비 : 13,347,292,000원

▣ 예산전용(지방재정법 제49조, 시행령 55조)

○ 일반회계

부 서	횟수	전 용 액(원)	비 고
합 계	30	1,432,304,000	
감사담당관	1	1,052,000	
총무과	2	30,536,000	
공보관광과	1	9,000,000	
문화체육과	2	3,768,000	
전산정보과	1	54,246,000	
기획예산과	1	3,400,000	
지역경제과	1	5,000,000	
주민생활지원과	1	900,000,000	
사회복지과	1	59,728,000	
가정복지과	2	41,189,000	
교육지원과	4	21,240,000	
청소행정과	1	19,250,000	
주택과	1	400,000	
공원녹지과	2	947,000	
교통행정과	1	6,400,000	
건설관리과	3	22,160,000	
치수방재과	2	242,598,000	
지역보건과	1	6,330,000	
의약과	2	5,060,000	

○ 주차장특별회계

부 서	횟수	전 용 액(원)	비 고
합 계	1	3,900,000	
교통행정과	1	3,900,000	

▣ 예산이체(지방재정법 제47조)

- 이체사유 :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사무조정
- 이 체 일 : 2008.12.26, 2009.05.26
- 이체건수 : 107건
- 이체금액 : 7,215,563,400원

▣ 다음연도 이월사업(지방재정법 제50조)

가. 명시이월

○ 일반회계

(단위 : 원)

부 서	건수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13	16,201,697,500	8,900,474,390	3,876,892,970	7,038,730,000	5,286,074,530
문화체육과	2	300,000,000			300,000,000	
주민생활지원과	1	10,781,356,500	7,601,235,230	3,333,336,230	3,000,000,000	4,448,020,270
사회복지과	4	4,207,266,000	1,237,726,600	482,044,180	2,895,655,000	829,566,820
교육지원과	5	140,000,000	40,000,000	40,000,000	100,000,000	
지 적 과	1	773,075,000	21,512,560	21,512,560	743,075,000	8,487,440

○ 주차장특별회계

(단위 : 원)

부 서	건수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1	1,383,000,000	178,719,600	118,257,600	1,187,198,000	77,544,400
교통행정과	1	1,383,000,000	178,719,600	118,257,600	1,187,198,000	77,544,400

나. 사고이월

○ 일반회계

(단위 : 원)

부 서	건수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22	44,577,031,360	33,654,041,260	20,723,836,310	13,118,112,050	10,735,083,000
자치행정과	2	5,111,580,000	3,796,074,610	2,830,913,470	965,161,140	1,315,505,390
문화체육과	1	208,316,000	25,762,500		25,762,500	182,553,500
전산정보과	3	2,300,000,000	2,230,082,800	676,800,000	1,553,282,800	69,917,200
지역경제과	1	450,000,000	395,592,000	140,392,000	255,200,000	54,408,000
주민생활지원과	2	11,422,856,500	8,242,735,230	3,469,043,230	4,773,692,000	3,180,121,270
사회복지과	1	4,164,451,000	1,227,726,600	472,044,180	763,682,420	2,928,724,400
가정복지과	1	280,000,000	222,612,710	95,735,110	126,877,600	57,387,290
주 택 과	1	593,890,000	516,255,000	438,084,840	78,170,160	77,635,000
도시디자인과	2	2,459,500,000	2,139,359,630	1,953,265,630	186,094,000	320,140,370
지 적 과	1	176,523,000	26,939,840	21,954,620	4,985,220	149,583,160
공원녹지과	3	7,283,249,580	5,815,389,630	3,211,982,760	2,605,406,870	1,465,859,950
교통행정과	1	1,489,268,000	942,208,500		1,039,553,500	449,714,500
토 목 과	1	800,000,000	632,658,900	51,029,160	643,448,230	105,522,610
치수방재과	2	7,837,397,280	7,440,643,310	7,362,591,310	96,795,610	378,010,360

○ 주차장특별회계

(단위 : 원)

부 서	건수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2	1,711,800,000	465,573,740	215,307,740	250,266,000	1,246,226,260
교통행정과	2	1,711,800,000	465,573,740	215,307,740	250,266,000	1,246,226,260

▣ 예비비 지출 현황

○ 일반회계

(단위 : 원)

부 서	건수	지출결정액	지출원인행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합 계	7	713,924,000	659,398,650	393,308,340	255,200,000	65,415,660
자치행정과	2	94,613,000	94,495,650	94,495,250		117,750
민원여권과	1	30,180,000	30,180,000	19,290,090		10,889,910
지역경제과	2	494,131,000	439,723,000	184,523,000	255,200,000	54,408,000
공원녹지과	1	84,000,000	84,000,000	84,000,000		
치수방재과	1	11,000,000	11,000,000	11,000,000		

▣ 기금 결산 현황(순계)

○ 기금 : 15종

- 전년도말 현재액 : 29,767,778,504원
- 당해연도 조성액 : 23,447,193,315원
- 당해연도 지출액 : 17,371,646,297원
- 당해연도말 현재액 : 35,843,325,522원

〈 검토의견 〉

○ 결산총괄

o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 결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3,527,995,817원이 포함된 404,220,802,817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18,008,702,637원이고 지출액은 325,036,691,765원으로 차인잔액 92,972,010,87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

o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8,225,928,000원, 사고이월은 13,368,378,05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4,758,067,756원이며 이를 공제한 66,619,637,064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음.

○ 일반회계

o 2009회계연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7,755,625,608원이 포함된 365,754,370,608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76,545,924,611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2.95%로 초과징수 되었으며, 징수결정액 405,995,446,221원에 비하여 실제 징수율은 약 92.8%로 전년도의 91.3%에 비해 1.5% 증가되었음.

o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자주재원의 징수결정액은 205,566,584,251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76,117,062,641원으로, 자주재원인 구세와 세외수입의 실제 징수율은 약 85.7%로 전년도의 83.7%에 비해 증가되었으나, 향후에도 징수율 제고에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o 지방세의 지난년도수입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 1,154,498,930원 대비 약 56.6%에 해당하는 653,222,960원으로 전년도의 징수율 53.9%, 보다 실제징수율이 2.7% 증가하였으며 당초 세입목표 예산액 563,286,000원의

약 115.97%에 해당하는 수납실적으로 해마다 징수율이 제고되고는 있으나, 지난년도 체납금에 대한 징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고 사실상 징수가 불가한 체납금에 대해서는 결손처리 등을 통하여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세외수입에서 예산현액대비 이자수입이 202.2%, 시도유재산매각수입이 195.5%,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이 380.3%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이 234.3%, 기타잡수입이 139.5%, 지난연도 수입이 133.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바, 징수율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지만 지방재정법 제34조와 제36조등 제반 법규정에 의하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여야 하며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게 되어 있는바. 당초 세입추계시 목표를 하향 설정하지는 않았는지 또는 세입추계가 부정확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는지 등을 검토하여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관련부서간의 긴밀한 협조로 세입추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2009회계연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7,755,625,608원이 포함된 365,754,370,608원이 되겠으며 이중 약 84.0%에 해당하는 307,086,584,816원이 지출되고,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 마포종합복지지원센터건립사업의 시설비 등 당해 연도내 지출원인행위가 불가한 13건의 사업비 7,038,730,000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자치행정과 도화동 복합청사 건립사업의 시설비 등 22건의 사업비 13,118,112,050원이 절대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총무과의 사망조위금 지급 신청 증가 등에 따른 연금지급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 확보 등을 위하여 30건에 1,432,304,000원이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되었으며, 2008년 12월 26일, 2009년 5월 26일 두차례의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사무조정으로 107건에 7,215,563,400원이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체되었음.

○ 2009회계연도에 발생한 예산집행잔액(불용액)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약 10.5%에 해당하는 38,510,943,742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사업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4,923,244,219원, 예산절감 130,726,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23,271,954,293원, 보조금 집행잔액 4,385,483,230원, 예비비 5,799,536,000원으로 전년도 불용액 발생비율 약 15.6%보다는 약 5.1%가 감소되었음.

○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결과 발생한 예산집행잔액(불용액) 38,510,943,742원중 계획변경 취소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의 약 12.8%에 해당하는 4,923,244,219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주변상황과 여건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소요비용에 대한 추계가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된 결과 계획이 취소되고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후 예산편성 시에는 불용액 발생원인 등을 세밀히 분석한 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재원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적정예산을 편성하여야 될 것이며, 예산절감액은 130,726,000원으로 전년도의 156,308,790원보다 감소하였는바, 많은 부분에서 예산 절감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전용은 2008회계연도에는 23건에 573,107,000원을 전용하였으나 2009회계연도에는 30건에 1,432,304,000원을 전용하였는바, 전용은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예외조항이므로 최소한에 그치도록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좀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향후에는 관련부서 및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시 보다 유기적인 협조하에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이체는 107건에 7,215,563,400원이 이체되었는바, 이는 두차례의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는 판단됨.

○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 2009회계연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없이 476,829,000원이 되겠고, 징수결정액은 665,399,578원이나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약 72.66%에 해당하는 483,505,538원이 되겠으며, 미수납액 181,894,04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음.

○ 2009회계연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없이 476,829,000원이고 세출예산현액 대비 약 79.1%에 해당하는 376,997,940원이 지출되고, 예산집행잔액(불용액)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약 20.9% 해당하는 99,831,060원이 되겠음.

○ 주차장특별회계

○ 2009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772,370,209원이 포함된 32,493,216,209원이 되겠고, 징수결정액은 61,337,621,247원이나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약 58.1%에 해당하는 35,663,249,988원이 되겠으며, 미수납액 25,674,371,259원 중 1,096,779,644원은 결손처분 되었고, 24,577,591,615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음. 세입예산 중 지난연도수입의 징수결정액대비 징수율이 2007회계연도에는 8.0%, 2008회계연도에는 8.7%, 2009회계연도에는 11.5%로, 점차 징수율이 향상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징수율이 저조한 바 지난년도 체납금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됨.

○ 2009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772,370,209 원이 포함된 32,493,216,209원이고 세출예산현액 대비 약 40.2%에 해당하는 13,055,952,427원이 지출되고, 도화 공영주차장 건설비 1,187,198,000원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되었으며,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의 평화의공원 내 자전거 처리 써비스센터 설치비와 도화 공영주차장 실시설계비로 250,266,000원은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 되었고, 교통행정과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에서 자전거 출퇴근 이용 우수직원 포상금 지급에 따른 예산 확보를 위하여 사무관리비에서 3,900,000원을 포상금으로 전용되었음.

○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 2009회계연도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569,626,000원이 되겠고, 징수결정액은 1,602,557,758원이나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약 94.6%에 해당하는 1,516,571,858원이 되겠으며, 미수납액 85,985,9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음.

○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569,626,000원이고, 세출예산현액 대비 약 96.6%에 해당되는 1,515,756,350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불용액)은 약 3.4%에 해당하는 53,869,650원이 되겠음.

○ 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

○ 2008년 12월 11일 조례 제726호로 설치된 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3,926,761,000원이나 실제수납액은 예산현액대비 96.8%에 해당하는 3,799,450,640원이 되겠으며,

○ 세출예산현액은 3,926,761,000원이고, 세출예산현액 대비 약 76.4%에 해당되는 3,001,400,232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불용액)은 약 23.6%에 해당하는 925,360,768원이 되겠음.

○ 예비비지출

○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결산서에 포함하여 제출된 것으로

○ 2009회계연도 마포구 일반회계 예비비는 7건에 713,924,000원이 지출 결정되어 393,308,340원이 지출되고 255,200,00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65,415,660원이 집행잔액(불용액)으로 남았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없음.

○ 예비비 지출 세부 내역은

- 일반회계에서 자치행정과 동행정지원에서 서강동 동청사 관련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배상금 확보를 위하여 83,351,000원이 지출결정되어 83,233,650원이 지출되고 117,3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 자치행정과의의 동행정지원에서 자치회관 및 동주민센터에 설치할 손소독기 구매비용 확보를 위하여 11,262,000원이 지출결정 되어, 11,261,600원이 지출되고 4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 민원여권과 고객상담 콜센터운영에서 콜센터 민간위탁금 부족분 확보를 위하여 30,180,000원이 지출결정 되어, 19,290,090원이 지출되고 10,889,9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 지역경제과 마포 디자인개발 진흥지구 지정사업에서 서울시 산업뉴타운 프로젝트 선정에 따른 마포 디자인개발 진흥지구 진흥계획 연구용역비 확보를 위해 450,000,000원이 지출결정 되어 140,392,000원이 지출되고 255,200,000원이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54,40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 지역경제과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사업에서 재래시장 여성화장실 개선사업을 위한 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구비 분담금 확보를 위하여 44,131,000원이 지출결정 되어 전액 지출되었으며,
- 공원녹지과 현석동 마을마당 조성사업에서 토지보상금 불복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판결금 확보를 위하여 84,000,000원이 지출결정 되어 전액 지출되었고,
- 치수방재과 수방대비 체계확립사업에서 호우피해 재난지원금확보를 위하여 11,000,000원이 지출결정 되어 전액 지출되었는바,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이기는 하나, 민원여권과의 콜센터 민간위탁 운영금 부족분은 2009. 9. 4일 지출결정 되어 2009. 9. 7일 지출된 경비로 36.1%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 바, 이는 2008년도 12월분 콜센터 운영비 부족분으로 사전에 충분히 지출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판단되므로, 향후에는 예비비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가급적 예비비 지출은 억제하고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사업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예산편성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운용이라 사료되며,

○ 기 금

○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결산서에 포함하여 제출된 것으로

○ 2009회계연도 마포구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등 총 15종으로서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순계규모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29,767,778,504원으로 2009 회계연도 조성액은 23,447,193,315원이며 지출액은 17,371,646,297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075,547,018 원이 증가한 35,843,325,522원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검사의견서와 결산서 및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